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
<개정 2024. 4. 9.> 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(앞쪽)

등록번호		화학물질 등록통지서	
제 호			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	
	구분	[] 제조·수입자 []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[] 위탁한 자	
화학물질의 구분		[] 신규화학물질 [] 기존화학물질	
화학물질명(총칭명)			
고유번호(CAS No.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)			
등록의 형태		[] 0.1톤 이상 1톤 미만 [] 1톤 이상 10톤 미만 [] 1톤 이상 100톤 미만 []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[] 1,000톤 이상 [] 고분자화합물 [] 나노물질 [] 현장분리중간체 [] 수송분리중간체 []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[]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화학물질 ([] 0.01톤 미만 [] 0.01톤 이상 0.1톤 미만 [] 0.1톤 이상 1톤 미만)	
화학물질의 용도	용도분류체계		
	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		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학물질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.			
년 월 일			
화학물질안전원장		직인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